

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(안) 대비표

[개정시행일 : 2024년 12월 20일,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]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24년 4월 1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<생략> 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 ① <생략> 1. ~2. <생략> <u>3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</u> <u>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</u> <u>5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</u> <u>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</u> <u>7. 이율보증형보험(GIC)</u> <u>8. 파생결합사채(ELB)</u> <u>9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</u> <u>10. 제3호 내지 제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u> <u>11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u> <u><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24년 12월 20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<좌동> 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 ① <좌동> 1. ~2. <좌동> <u>3. 발행어음</u> <u>4. 환매조건부채권(RP)</u> <u>5. 이율보증형보험(GIC)</u> <u>6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리금보장형</u> <u>7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</u> <u>8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</u> <u>9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</u> <u>10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</u> <u>11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</u> <u>12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금보존추구형</u> <u>13. 제7호 내지 제10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u></p>	<p>개정일 명시</p> <p>상품 추가에 따른 자산 매각순서 변경</p>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② <생략></p> <p>[별지2]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<생략></p>	<p>14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<좌동></p> <p>[별지2]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<좌동></p>	

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(안) 대비표

[개정시행일 : 2024년 12월 20일,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]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2조~제4조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(수수료의 징수) <생략> 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<생략> 1. ~ 3. <생략></p> <p>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5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7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8. 이율보증형보험(GIC) 9. 파생결합사채(ELB) 10.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1.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2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 13.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2조~제4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<좌동> 제4조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<생략> 1. ~ 3. <생략></p> <p>4. 발행어음 5. 환매조건부채권(RP) 6. 이율보증형보험(GIC) 7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리금보장형 8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 9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 10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 11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 12.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3.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p>	<p>개정일 명시</p> <p>상품 추가에 따른 자산 매각순서 변경</p>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<u>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u></p> <p><u>14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<생략></p> <p>[별지2]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<생략></p>	<p>14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</p> <p>15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금보존추구형</p> <p>16.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p> <p>17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<생략></p> <p>[별지2]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<좌동></p>	

■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(안) 대비표

[개정시행일 : 2024년 12월 20일,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]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24년 4월 1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2조~제4조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<생략> 제4조 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<생략></p> <p>1. ~ 3. <생략></p> <p><u>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</u></p> <p><u>5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</u></p> <p><u>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</u></p> <p><u>7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</u></p> <p><u>8. 이율보증형보험(GIC)</u></p> <p><u>9. 파생결합사채(ELB)</u></p> <p><u>10.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</p> <p><u>11.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</p> <p><u>12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24년 12월 20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2조~제4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<좌동> 제4조 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<생략></p> <p>1. ~ 3. <생략></p> <p><u>4. 발행어음</u></p> <p><u>5. 환매조건부채권(RP)</u></p> <p><u>6. 이율보증형보험(GIC)</u></p> <p><u>7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리금보장형</u></p> <p><u>8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</u></p> <p><u>9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</u></p> <p><u>10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</u></p> <p><u>11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</u></p> <p><u>12.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</p>	<p>개정일 명시</p> <p>상품 추가에 따른 자산 매각순서 변경</p>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<u>13.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u></p> <p><u>14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<생략></p> <p>[별지2]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<생략></p>	<p><u>13.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</p> <p><u>14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</u></p> <p><u>15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금보존추구형</u></p> <p><u>16.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u></p> <p><u>17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u></p> <p>② <생략></p> <p>[별지2]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<좌동></p>	

■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(안) 대비표

[개정시행일 : 2024년 12월 20일,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]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서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24년 4월 1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2조~제3조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<생략> 제4조 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 ① <생략> 1. ~ 3. <생략> <u>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</u> <u>5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</u> <u>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</u> <u>7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</u> <u>8. 이율보증형보험(GIC)</u> <u>9. 파생결합사채(ELB)</u> <u>10.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<u>11.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<u>12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</u> <u>13.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서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24년 12월 20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2조~제3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<좌동> 제4 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 ① <생략> 1. ~ 3. <생략> <u>4. 발행어음</u> <u>5. 환매조건부채권(RP)</u> <u>6. 이율보증형보험(GIC)</u> <u>7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리금보장형</u> <u>8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</u> <u>9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</u> <u>10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</u> <u>11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</u> <u>12.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 <u>13.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</p>	<p>개정일 명시</p> <p>상품 추가에 따른 자산 매각순서 변경</p>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p> <p>14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② <생략></p> <p>제5조 <생략></p> <p>[별지2]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교육위탁계약서 <생략></p>	<p>14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</p> <p>15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금보존추구형</p> <p>16.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p> <p>17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② <생략></p> <p>제5조 <좌동></p> <p>[별지2] 개인형퇴직연금(기업형) 교육위탁계약서 <좌동></p>	

■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(안) 대비표

[개정시행일 : 2024년 12월 20일,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]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24년 4월 1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 2 조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<생략></p> <p>제4조 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<생략></p> <p>1. ~ 3. <생략></p> <p><u>4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</u></p> <p><u>5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</u></p> <p><u>6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</u></p> <p><u>7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</u></p> <p><u>8. 이율보증형보험(GIC)</u></p> <p><u>9. 파생결합사채(ELB)</u></p> <p><u>10.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</p> <p><u>11.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서는 <u>2024년 12월 20일</u>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제 2 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별지1]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</p> <p>제1조~제3조 <좌동></p> <p>제4조 (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)</p> <p>① <생략></p> <p>1. ~ 3. <생략></p> <p><u>4. 발행어음</u></p> <p><u>5. 환매조건부채권(RP)</u></p> <p><u>6. 이율보증형보험(GIC)</u></p> <p><u>7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리금보장형</u></p> <p><u>8. 집합투자증권(채권형)</u></p> <p><u>9. 집합투자증권(채권혼합형)</u></p> <p><u>10. 집합투자증권(주식혼합형)</u></p> <p><u>11. 집합투자증권(주식형)</u></p>	<p>개정일 명시</p> <p>상품 추가에 따른 자산 매각순서 변경</p>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<u>12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</u></p> <p><u>13.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u></p> <p><u>14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<생략></p> <p>제5조 <생략></p>	<p><u>12.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</p> <p><u>13.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</u></p> <p><u>14. 실물유가증권(주식, 채권)</u></p> <p><u>15. 파생결합사채(ELB/DLB) 원금보존추구형</u></p> <p><u>16.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.</u></p> <p><u>17.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.</u></p> <p>②<생략></p> <p>제5조 <좌동></p>	